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 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수가표는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6%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0%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

을 체결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굿모닝재가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대구은행 504-10-357209-6”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6.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수급자/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와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 ⑤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수급자/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③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 ④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3.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질병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a.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b.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c. 담당요양보호사나 센터에서 수급자나 신원인수인이 요청하는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장기입원한 경우
 -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 9)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 10) 장기간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 11)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12)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의 해지

-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③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해지의 통지를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6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대상자 : 6% 경감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20분 이상	43,430	210분 이상	63,530
60분 이상	25,320	150분 이상	50,640	240분 이상	70,080
90분 이상	34,120	180분 이상	57,02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굿모닝재가복지센터

2025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대상자 : 6% 경감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20분 이상	42,160	210분 이상	61,670
60분 이상	24,580	150분 이상	49,160	240분 이상	68,030
90분 이상	33,120	180분 이상	55,35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1,7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
60분 이상	62,93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굿모닝재가복지센터

2024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대상자 : 6% 경감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20분 이상	41,380	210분 이상	60,530
60분 이상	24,120	150분 이상	48,250	240분 이상	66,770
90분 이상	32,510	180분 이상	54,32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굿모닝재가복지센터

2023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대상자 : 6% 경감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굿모닝재가복지센터

2022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대상자 : 6% 경감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20분 이상	38,390	210분 이상	56,170
60분 이상	22,380	150분 이상	44,770	240분 이상	61,950
90분 이상	30,170	180분 이상	50,40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7,8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
60분 이상	57,09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굿모닝재가복지센터

2021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대상자 : 6% 경감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20분 이상	38,340	210분 이상	52,400
60분 이상	22,640	150분 이상	43,570	240분 이상	56,320
90분 이상	30,370	180분 이상	48,17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6,53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
60분 이상	55,12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굿모닝재가복지센터

2020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대상자 : 6% 경감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20분 이상	37,780	210분 이상	51,630
60분 이상	22,310	150분 이상	42,930	240분 이상	55,490
90분 이상	29,920	180분 이상	47,46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6,1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60분 이상	54,49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굿모닝재가복지센터

2019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대상자 : 6% 경감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120분 이상	36,720	210분 이상	50,190
60분 이상	21,690	150분 이상	41,730	240분 이상	53,940
90분 이상	29,080	180분 이상	46,13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5,23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
60분 이상	53,17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굿모닝재가복지센터